

의안번호	2213076
의 퇴 인	조계원의원
회 답 일	2025. 11. 12.
추계번호	25C52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70억 5,200만원, 2031년 264억 8,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094억 8,300만원(연평균 218억 9,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의무화 (안 제10조의3제4항)	17,052	19,866	21,972	24,105	26,488	109,483	21,89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3(장애인 체육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는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사를 두어야 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의3(장애인 체육의 진흥)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경우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¹⁾을 통하여 실시 중인 내용으로서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아니함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관(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으로 가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15개소,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은 30개소, 반다비 체육센터는 34개소(2031년까지 52개소 개관 예정)이고, 개소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5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현황(2025. 9. 기준)

시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예정)	계
개소수	15	30	34	52	1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5561-301): 29,600백만원(2025년 예산)

- 현재 실시 중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²⁾은 지역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가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도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개정안에 따른 상시 배치와는 성격이 달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예산 반영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인건비는 현재 실시 중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관리 사업 중 지도자 인건비(2025년 269만원, 기관부담금 포함)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³⁾를 적용하여 산출함
- 추계기간 중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의 수는 각각 15개소, 30개소로 현재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반다비 체육센터의 경우 2030년까지 개관 예정인 52개소가 2025년 7개소, 2026년 12개소, 2027년 12개소,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해 7개소 개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반다비 체육센터의 경우 2026년은 2025년 9월 현재 34개소에 7개소를 더한

2)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사업 중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관리(16,509백만원, 2025년 기준)

3)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2025. 7)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9	3.8	3.8	3.8	3.8	3.8

41개소, 2027년은 41개소에 12개소를 더한 53개소,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각각 65개소, 72개소, 79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2031년은 2030년 7개소 개관을 포함한 86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각 시설에 배치되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수는 현재 공공 생활체육시설에 평균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스포츠지도사 인원인 5명을 적용함
- 추계결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5명씩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094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개소,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5	15	15	15	15	75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	30	30	30	30	30	150
반다비 체육센터(개관 예정 포함)	53	65	72	79	86	355
계(A)	98	110	117	124	131	580
시설당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수(B)	5	5	5	5	5	—
월급여(C)	2.90	3.01	3.13	3.24	3.37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A×B×C×12개월)	17,052	19,866	21,972	24,105	26,488	109,483

주: 단수 조정 등에 따라 합계액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